

2023년 4월 8일 시행 국가직 9급공무원 공채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 임현 교수

01 클라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하였다.
- ②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 ③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 ④ 비행 하위문화를 갈등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폭력하위문화(violent subculture), 도피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구분하였다.

정답 ④

해설

- ④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은 기회구조의 통합 정도를 기준으로 비행하위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 갈등적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도피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로 분류하였다. 범죄적 하위문화는 범죄의 학습기회와 수행기회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하위문화권의 청소년은 관습적이며 비행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므로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절도·강도 등 범죄 및 비행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갈등적 하위문화는 조직적인 범죄의 학습기회는 없지만 사회통제가 취약하여 폭력의 수행기회는 있는 곳에서 발생하며 비행기술을 배울 기회도 많지 않고 비행의 실행기회는 적기 때문에 비행의 성공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이다. 도피적 하위문화는 범죄의 학습기회도 수행기회도 제한된 곳에서 발생하며 합법적·비합법적 기회 모두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실패자라고 부르며 이중실패자는 술·마약 등의 획득·소비에 몰두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유형이다.
- ③ 클라워드와 올린은 비합법적 기회구조의 분포에 따라 범죄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을 확대·발전시켰다.

02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 ②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 ③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 ④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 ①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감시나 행정편의를 위하여 감시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②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③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④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정답 ③

해설

- ③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

더 알아보기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0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②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③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 ④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
- ①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1호).
- ②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2호).
- ④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를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

더 알아보기

경비처우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개방처우급 :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 2. 완화경비처우급 :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 3. 일반경비처우급 :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 4. 중(重)경비처우급 :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05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함
-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제도의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일으킴

- ① 머튼(Merton)
- ②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 ③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 Clarke)
- ④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정답 ④

해설

- ④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수많은 제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제도에 힘의 불균형이 나타날 때 아노미가 발생한다고 보며, 메스너와 로젠펠드는 특히 경제제도를 강조하였다.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경제제도는 인간의 자율적 동기,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에 비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능이 약한 특성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력에 따른 빈부 간 격차,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제도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들은 개인의 가치를 물질적 성공으로 측정하고 돈을 성공을 위한 절대적인 수단으로 여기며,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게 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통하여 아노미를 설명한다.

06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 ②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저지른 개개인의 사적 잘못(private wrong)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부각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원상에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공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강조하는 응보적 사법이다.

07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베카리아(C. Beccaria)
ㄷ. 리프만(M. Liepmann)

ㄴ. 루소(J. Rousseau)
ㄹ. 캘버트(E. Calvert)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③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 ㄷ, ㄹ (O) :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C. Beccaria), 독일의 리프만(M. Liepmann), 영국의 캘버트(E. Calvert)이다. 그 외에 사형폐지론자로는 존 하워드(J. Howard), 서덜랜드(E.H. Sutherland), 페스탈로찌(Pestalozzi), 나탈레(Natale) 등이 있다.

ㄴ (X) :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루소(J. Rousseau)는 사형존치론자이다. 루소는 시민이 국가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사형제도를 시민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살인자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스로 사회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게 되고 그는 공공의 적이 되며, 사형제도는 국가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 외에 사형존치론자로는 칸트(I. Kant), 비르크메이어(Birkmeyer) 등을 들 수 있다.

0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ㄴ.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ㄷ.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ㄹ.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③

해설

- ③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ㄱ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
 ㄴ (○) : 동법 제14조의2 제3항 제4호, 제4항
 ㄷ (○) : 동법 제14조의2 제5항
 ㄹ (×) :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동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더 알아보기

보호소년등에 대한 수갑, 포승, 보호대의 사용사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수갑, 포승, 보호대 외에 가스총, 전자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09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2조). '소년교도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전문가의 진단이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소년교도소'는 규정에 없다.
- ① 동법 제11조 제1항
- ② 동법 제17조의2 제1항
- ③ 동법 제16조 제2항

10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 ②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 ④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법률상 비범죄화'이다. 법률상 비범죄화에는 법률의 개정 등 입법에 의한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반면 사실상 비범죄화는 형사사법상의 공적 통제장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의 기피, 경찰의 무혐의처리,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절차중단 등 형사사법기관의 점진적 활동축소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비범죄화를 말한다.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 ①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②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③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④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정답 ②

해설

- ②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물품(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닐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

 **더 알아보기**

금지물품(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2.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3.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 ②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 ① 동법 제14조 제2호
 - ② 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③ 동법 제12조 제3항

더 알아보기

독거수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 ②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③ 동법 제35조
- ④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4항

14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 ②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 ③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 ④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정답 ②

해설

- ② 옴부즈맨(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으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하며, 1809년에서 1810년 사이에 스웨덴에서 창설되어 스칸디나비아로 확대되고, 뉴질랜드·영국·독일·이스라엘·미국·오스트레일리아 및 캐나다 등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옴부즈맨은 보통 의회에서 임명되지만 전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특정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고,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중재자로 활동하여야 한다. 즉 옴부즈맨의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옴부즈맨을 교정당국이 임명한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15세 미만인 경우
- ②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 ③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 ④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②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이다.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는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이 아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제3호).

- ① 동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1호
- ③ 동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2호
- ④ 동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4호

 **더 알아보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조)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 1. 15세 미만인 경우
-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 3.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 4. 작업, 교육·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질병·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 ②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 ④ 소장은 환경비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동법 제72조 제1항).
- ②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외부통근작업), 제69조 제2항의 훈련(외부직업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동법 제70조 제1항).

17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 ②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 ③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다.
- ④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다.

정답 ①

해설

- ①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 Cressey)는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범죄지향적 부문화, 수형지향적 부문화, 합법지향적 부문화로 유형을 나누었다. 수형자 부문화란 수형자사회에서 그들이 갖는 부문화(副文化, 하위문화, subculture), 즉 수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적 성향 또는 지향하는 가치를 말한다.
- ②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반사회적 범죄자문화를 고집하고 출소 후에도 계속 범죄생활을 할 것을 지향하여, 범죄생활이 일상화된 자들의 부문화이다. 교도소 내에서의 지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반교도소적인 경향이 많다.

- ③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용생활을 보다 쉽고 편하게 보내기 위해 교도소 내의 모든 생활방식을 수용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자들의 부문화이다. 교도소 내에서의 이점, 지위획득에만 몰두하며 출소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들은 가장 쉽게 교도소화되며, 출소 후 재입소율이 가장 높다.
- ④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준법적인 자들의 부문화로서, 이들은 준법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로서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범죄자문화에 가담하지 않고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르며, 교도관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재범률이 가장 낮다. 슈랙(Schrag)이 분류한 수형자의 역할유형 중 친사회적 고지식자(Prosocial square johns)에 가깝다. 반사회적 정의한(Antisocial right guys)에 가까운 것은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이다.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나,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공개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 제2호·제3호).
- ① 동법 제119조
- ② 동법 제120조 제1항·제2항
- ③ 동법 제122조 제1항

더 알아보기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 ③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②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① 동법 제19조 제3항
- ③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1항).
- ④ 동법 제19조의2 제1항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명한다.
- ④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정답 ②

해설

-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전단).
- ① 동법 제62조 제3항
- ③ 동법 제62조 제2항 후단
- ④ 동법 제62조 제1항